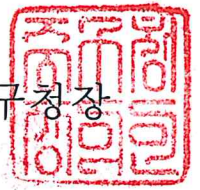


이 조례 및 규칙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
2019년 3월 20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치매관리법」 개정 및 「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치매관련 서비스 센터의 명칭 변경 및 누락·보완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치매관리법에 의거 종전의 “치매지원센터”를 “치매안심센터”로 변경함

(안 제명, 안 제1조, 안 제2조제1항)

나. 치매관리법에 의거 센터업무에 대한 내용 현행화(안 제3조)

다.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협약체결 사항에 “수탁기관의 명칭·주소,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” 추가(안 제4조제2항) 및 협약기간을 “2년 이내”에서 “3년 이내”로 개정(안 제4조제3항)

라. 준용 근거법령을 “지역보건법”에서 “치매관리법”으로 변경, “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” 추가(안 제10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(참조: 건강관리과, 주소: 서울특별시 다산로 39길 16(무학동), 문의전화: 02-3396-6373, FAX: 02-3396-4000, 메일: monesa@junggu.seoul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1부. 끝.